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1. 9.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1. 인권영향평가 의의 ········ 1
2.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 4
3.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 6
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인권영향평가 ········ 6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 7
4.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 8
가. 사전 정보 ········ 8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9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11

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14
1. 평가 종합 ········ 14
가. 총평 ········ 14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15
2. 분야별 평가 ········ 16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16
나. 고용상 비차별 ········ 18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9
라. 강제노동의 금지 ········ 20
마. 아동노동의 금지 ········ 21

바. 산업안전 보장 ·· 22
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24
아. 현지주민 인권보호 ··· 25
자. 환경권 보장 ·· 26
차. 소비자 인권보호 ··· 27

Ⅲ.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29
1. 하남교산 공공주택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29
가. 평가 종합 ·· 29
1) 총평 ··· 29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30
나. 분야별 평가 ··· 30
1) 사업기획 ··· 30
2)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 31
3) 실시계획 승인, 설계 및 발주 ·· 32
4) 택지조성 ··· 33
5) 용지분양 ··· 35
6) 사후관리 ··· 35

2. 화성동탄2 A105BL 경기행복주택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37
가. 평가 종합 ·· 37
1) 총평 ··· 37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38

나. 분야별 평가 ······ 38

1) 사업기획 ······ 38

2) 설계·발주 ······ 39

3) 주택건설 ······ 40

4) 입주자 모집 공고 ······ 41

5) 입주자 선정 ······ 42

6) 임대 관리 ······ 43

Ⅳ. 2022-2024 중점 추진 과제 ······ 45

I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의의

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준수

구분	세부 내용
개요	•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로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
기타 CSR규범과의 차별성	• 유일하게 UN 회원국이 승인한 규범으로, 가입국의 법과 제도, 정책에 적용되어 기업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협력적 패러다임을 넘어 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비사법적 구제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 내 구제절차 수립 및 이행 책임은 물론 국가의 개입 여지 확대 • 영향권을 기준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공급망 관리에 관한 책임이 중요하게 대두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국가의 보호의무, para.1~10> • 기업과 같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 • 관할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대 표명 •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회사법과 같은 기업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집행 •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

	는 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추가적 조치 시행 •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나 조달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 • 투자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 간 기구에 참여할 때에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para.11~24> •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에 따라 인권을 존중 •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 •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 이행 • 이행결과 개선 조치는 기업 정책과 통합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실행성과를 추적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 전 과정에서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구제에 대한 접근, para.25~31> •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 •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운영이 정당해야 하며, 피해자가 접근 가능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가 예측가능하며,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고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운영 • 고충처리 절차 이행 결과와 구제조치가 인권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충처리 절차는 참여와 화해에 기초

이행 기구 및 활동	•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또는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운영으로 UNGPs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보급과 이행 • UNGPs 이행과 관련된 모든 주체(정부, 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보유자 등)들과 우수사례 및 경험, 정보 공유 •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 자문제공과 권고는 물론, 역량 강화 및 UNGPs 활용 촉진 지원 • 국가방문 수행 • 분쟁지역을 포함해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권침해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옵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권고 • 임무 수행 전반에 젠더 관점을 견지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특히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 •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절차, UN과 기타 국제기구, 조약기구와 지역 인권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 정부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든 행위자(유엔기구,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정기적인 대화 및 협력 논의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포럼 주최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 •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Agenda 2030) 관점에서 UNGPs 이행 고려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대응

구분	세부 내용
제도화 취지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내이행의 효과적 접근 방식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준수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산을 위한 전략적 조치
적용・확산	• (도입기, 2008~2015) UNGPs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모범사례 연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인권경영 자가진단 도구 개발,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 수립, 기업과 인권 추진 로드맵 수립, 교육자료・인권경영 매뉴얼 제작 배포

	• (정착기, 2016~2019)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대상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권고 및 수용,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을 통한 민간기업의 인권 경시 풍토 개선,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 개발 • (확산기, 2020~) 민간기업으로 인권경영 제도화 확산 • 한편 국가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공사 또한 경기도의 특수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국내법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호・충족 의무 이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다. 공사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구분	세부 내용
실무능력 강화	• 인권영향평가 수행 과정은 담당 부서는 물론 조직구성원들이 공사 운영 및 사업추진 관련 인권이슈, 법령, 공사 내부규정, 정책과 제도, 실천계획을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조직적 성과	•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확산과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성과정보 수집체계 강화에 기여

2.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가. 개념 이해

구분	개념
인권경영	• Business & Human Rights •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지지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해,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공사 경영 활동

인권경영시스템	• System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 Human Rights •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 Due Diligence • 공사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 •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공사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
인권영향평가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 •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

나. 특징 및 주요 요소

구분	개념
특징	•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 • 공사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 •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
주요 요소	•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 • 평등과 비차별 원칙 • 접근성과 투명성 •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 •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 •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공사의 참여) •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

3.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가. 인권실사 및 실천 · 점검의무 & 인권영향평가

활용

- 개선조치 실행 성과 추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정보 관리
- 인권경영 성과 공개 및 경영평가 대응

⇧

결과 조치

- 평가결과 및 개선 조치 심의
- 인권경영위원회

⇨

- 사장 보고
- 평가결과 및 개선 조치 승인

⇨

- 개선조치 실행
-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

평가결과 분석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 및 사업 관행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도출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 수립

⇧ ⇧ ⇧

인권영향 평가실행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인터뷰
•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관행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인권리스크 파악	• 평가대상 주요 사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인권 리스크 파악 • 선정절차를 통해 1~2개 사업 선정	• 공사운영 및 주요사업 관행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에 처한 이해관계자 대상

⇧

필요성

법적 리스크 대응	경쟁력 강화	평판 관리
• 기업과 인권 이슈가 국내·외 주요 의제로 대두 •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법·제도 수립 및 강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 우수 인재 확보 • 사업기회 증가 • 공사 지속가능성 증진	• 공사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관리 • 사업기회 확대, 우수인재 확보 선순환 구조 정착

나. GH 21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구분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 방안
1단계 준비 (7월)	•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자체수행) •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2단계 사전조사 및 교육 (7월~8월)	• **국내·외 기준에 따라 공사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검토 및 보완·개선 방향 도출** • 인권영향평가 범위 설정(기관운영+신규사업 2개) • **평가대상 사업 검토(하남교산 공공주택개발사업 등 2개)** • **인권영향평가 시행 관련 협조요청 (해당부서)** • **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주요사업 실무담당자 대상 교육(한국표준협회 시행)**
3단계 착수 (8월-9월)	• 1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시행 • 1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시행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 • **이해관계자 인터뷰**
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	•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 •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 •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
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	•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 • 실행 성과 결과 보고 •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붉은 표시부문은 평가 후속사항

4.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가. 사전 정보

1) 용어 구별

분야	항목	지표
• 공사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 • 공사가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존중해야) 하는 인권 목록	• 공사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실천 요소 • 공사가 필수 인권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요소	• 주요 실천 요소별 이해관계자 인권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2) 답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예(Yes)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 필요 (Further attention required)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계획 수립 필요)
아니오(N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향후 추진계획 필요)
정보 없음 (No Inf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and Unknown)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공사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e.g. 노조 부재 시 대안조치 - 노조 있음 등)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도출

검토		보완		개선 및 신설
• GH인권영향평가 실행매뉴얼(202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 ‘21년도 공사운영 및 사업 특성 검토	⇨	• ‘20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동일하게 채택

2)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외국인노동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11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1
		제품 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합계	10	32	152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 평가대상 사업 선정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인권 영향의 파급성	심각성	• 부정적 인권영향으로 인한 피해 정도
	회복 가능성	• 보상 등 구제를 통한 피해 원상회복 가능성 정도
	범위	• 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이해관계자 수 또는 지역적 범위
대표성	목적 사업	• 공사 설립 취지 및 미션과의 직접적인 관련 정도 • 중점 추진사업
지역 사회 연계성	지역 현안	• 지역사회의 현안 또는 이슈와 연계된 사업
독점성	승인/허가 · 인증/자격	• 정부 및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사업 또는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이나 허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선정 결과	• 하남교산 공공주택개발사업 • 화성동탄2 A105BL 경기행복주택사업

2) 체크리스트 도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해당 사업 추진 절차 검토	• 절차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류	• 이해관계자별 부정적 인권영향 고려	•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사업 관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3) 체크리스트 개요

가) 하남교산 공공택지개발사업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사업기획	사업참여	7
		사전협의	
2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지구지정 승인	11
		보상	
3	실시계획 승인, 설계·발주	실시계획 승인	9
		업체 선정	
		설계	
4	택지조성	공사시행	14
		공사준공	
5	용지분양	용지분양 및 계약	6
6	사후관리	사후관리	3
합계	6	11	50

나) 동탄2 A105BL 경기행복주택 사업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사업기획	사업참여	8
		사업계획 승인	
2	설계・발주	업체 선정	6
		설계	
3	주택건설	공사시행	14
		공사준공	
4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협의	5
		모집공고	
5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6
		계약체결	
		예비 입주자 명부 작성	
6	임대관리	입주관리	6
		입주계약 갱신	
합계	6	13	45

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종합

가. 총평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 · 이행 시스템	• 공사는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슈는 물론,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음 •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UNGPs>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권존중 책임 준수를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 이행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인권경영 추진 기구, 전담 조직,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기구를 구축·운영 중에 있어, 공사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조직 문화	• 법정 의무교육 외 인권경영 특강,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인권존중 관련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행사·이벤트 등을 통한 내부 구성원은 물론 공사 사업 참여자들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더불어 정례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사 정책과 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인권존중 문화의 조직 내재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핵심 이슈	• 전체 152개 지표 중 ‘해당없음’을 제외한 140개 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98.6%), 보완 필요(1.4%)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9.3점으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외에는 두드러진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는 파악되지 않았음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14				3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				1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6				8	100
6	산업안전 보장	17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2				93.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					100
9	환경권 보장	18					100
10	소비자 인권보호	11					100
합 계		138	2			12	99.3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 · 보완필요 3점 · 정보없음 1점 · 아니요 0점)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Σ(해당항목 지표점수) / (5×해당항목 지표수)*100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2. 분야별 평가

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 선언	• 공사 인권정책 수립 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제정 과정에서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후 개선 절차를 거치는 등 전문가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 전국 광역개발공사 15곳,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22곳을 대상으로 공사의 인권정책을 공유 및 확산성과가 있었음
인권영향 평가	• 공사 인권경영실행지침에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수립 및 2020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지표개발 과정은 물론 평가절차에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 • 특히 평가 과정에 공사 전담부서는 물론 관련부서가 참여하고, 공사 운영 및 사업관행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인권경영 제도화	• 인권정책 준수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실행지침을 제정하고 협의체 방식의 추진 기구 및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축·운영 중에 있음 •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합 구제지침을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금지를 포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인권정책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음 • 특히 인권경영헌장 및 실행지침에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노력과 준수를 요구하고, 비준수 사항 발생 시 적극적인 개선조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인권경영 성과 관리	• 2020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발굴해 개선계획에 반영·추진한 성과가 있었음 • 인권경영 추진 및 개선 성과를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글로벌콤팩트 실행보고서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전국 유관기관 및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구제 절차	• 인권경영헌장에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조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인권경영실행지침에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온/오프 방식의 다양한 구제절차 접근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 • 구제절차가 다루는 인권이슈는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구제대상은 내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존중정책 선언	6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 성과	7				
5	구제절차 마련	6				
합 계		30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정책 선언	• 향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 유지
인권영향 평가	• 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특화된 교육훈련의 제공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함.
인권경영 성과 관리	• 20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개선 및 발전 조치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정례화
구제 절차	• 고충처리절차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임직원 대상 설문 시행 •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합지침 마련(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참고)

나. 고용상의 비차별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고용상 비차별	• 인권경영 헌장 및 실행지침, 임직원행동강령, 취업규정, 인사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다층적으로 고용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실천하고 있음
고용상 남・여	•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복리후생, 정년퇴직, 해고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노동자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구 분	세 부 내 용
비차별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단체협약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인사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사 및 보수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용상 비차별	5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합 계		14				3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결사 · 단체교섭 자유	• 인권경영헌장과 실행지침에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존중,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조합 활동의 보장, 교섭사항 및 편의제공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노동조합	• 단체협약에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및 탈퇴할 수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있으며 쟁의 중 신분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통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자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단체협약에 교섭원칙 및 교섭위원 구성 규정에 성실한 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주요 경영정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통지 및 자료 열람 및 제공, 공사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합 계		14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라. 강제노동의 금지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강제노동 금지	• 인권경영헌장 및 실행지침에 강제노동 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취업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단체협약에 강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인권경영헌장에 모든 협력사와의 상생 및 인권경영실천 지원을 명시하고, 인권경영실행지침에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준수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강제노동의 금지	8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1
합 계		10				1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마. 아동노동의 금지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연소자 고용금지	• 인권경영헌장 및 실행지침에 아동노동을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준수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 연소자 고용사례 없음

경우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 고용 금지	5				1
2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경우	1				7
합 계		6				8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연소자 근로를 알게 된 경우	• 행사 및 축제 대행 협력사 및 하도급 사업장 아동노동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바. 산업안전 보장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작업장 안전 필수장비 제공, 교육실시	• 인권경영헌장 및 실행지침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권 및 건강권 보호와 증진 노력, 질병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품질・환경・안전보건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련 경영시스템과 교육 계획 및 과정, 교육시행, 성과평가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음

등	•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규정에 건강진단 제공을 명시하고 있음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에 모성보호를 명시하고,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야근 및 휴일근로 금지, 연장근로 및 시간 외 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 및 접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 1층에는 보청기, 점자책을 제공하고 점자 안내도를 설치하고 있음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 복리후생규정, 단체협약에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작업장 안전	5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5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합 계		17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자회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인권경영헌장 및 실행지침에 모든 협력사와의 상생, 인권경영실천 지원,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명시함으로써, 공급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준수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보안업무취급세칙에 인권, 문서, 시설보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2	2			
2	모니터링 실시	2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합 계		8	2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 협력 파트너 대상 인권존중 이행서약 징구

예방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수탁운영 중인 문서파쇄 보안용역 계약절차에서 인권존중 책임 준수를 요구

아. 현지주민 인권보호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지역주민 인권존중 보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업에서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공사가 취득 또는 공급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해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의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지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을 마련해 보상 및 이주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강제수용 및 이주관련 강제수단 사용 최소화 및 관습에 따른 권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지역주민 지식 재산권 보호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자가진단 절차를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3				
합 계		10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자. 환경권 보장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환경경영 체제 수립	•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규정에 환경관련 법규 준수,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 규정 및 시행세칙에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교육·훈련세칙에 품질·환경·안전관련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환경정보 공개	• 개발사업 과정 사업시행전 환경현황, 공사시 배출오염원, 공사완료시 배출오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함(각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비치 및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규정에 환경관련 법규 준수,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노력을 명시 • 환경 친화적 스마트 도시 창조, 친환경 녹색상품 사용 및 구매 관행

접근의 원칙	구축, 친환경 건설과 자원재활용 시스템 구축,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 환경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용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원칙 견지

비상계획 수립	• 건설현장의 안전캠페인 및 훈련 등 전 사업부서 대상으로 재난대비 모의훈련 시행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2	환경정보의 공개	3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4	비상계획 수립	5				
합 계		18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비상계획 수립	• 비상모의훈련 상황으로 환경피해발생 상황 지속 시행

차. 소비자 인권보호

1)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소비자 보호를	•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위한 법령준수	
제품 결함 시 조치	•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규정에 경영시스템, 경영책임, 경영검토 절차를 마련해 제품 결함 시 보수 및 보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소비자 사생활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관리,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해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4				
2	제품 결함 시 조치	1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합 계		11				

3)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Ⅲ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하남교산 공공주택개발 사업

가. 평가 종합

1) 총평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실사 시스템	• 공사는 사업기획 ➢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 실시계획 승인, 설계 설계·발주 ➢ 택지조성 ➢ 용지분양 ➢ 사후관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립하고 있음 •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익추구 또는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의사에 기초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개발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사업설계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검토 및 평가 결과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단계에서 토지 및 건축물 등 손실보상과 이주 절차는 관계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설계·발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장치를 선정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택지조성 단계에서는 사업 참여자의 인권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 감독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용지분양 단계에서 공사는 토지분양시스템에 공급대상 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입찰신청, 개찰을 실시,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종합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점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기획	7					100
2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11					100
3	실시계획 승인, 설계·발주	9					100
4	택지조성	14					100
5	용지분양	6					100
6	사후관리	3					100
합 계(평균)		50					100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Σ(해당항목 지표점수) / (5×해당항목 지표수)*100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나. 분야별 평가

1) 사업기획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참여	• 사업참여는 지자체 및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혜 및 사익 추구를 예방하고 비준수 사항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사전협의	•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참여	4				
2	사전협의	3				
합 계		7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참여 사전협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반영한 규정 마련 필요

2)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지구지정 승인	• 개발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사업설계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전문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검토 및 평가 결과는 지구승인 신청 직후, 보상단계, 착공 후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공람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
보상	• 토지 및 건축물 등 손실보상과 이주절차는 관계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 구제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주자의 관행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보상절차에서 현지주민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구지정 승인	3				
2	보상	8				
합 계		11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3) 실시계획 승인, 설계 및 발주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실시계획	• 개발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사업설계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승인	따라 각종 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전문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업체 선정	• 설계업체 및 시공사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에게 공사 인권정책 준수를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설계	• 공사 설계기준에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설계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을 설계반영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실시계획 승인	2				
2	업체 선정	5				
3	설계	2				
합 계		9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4) 택지조성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공사	• 시공사 및 하도급 참여자의 인권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산재 예

시행	방을 위한 안전마일리지 제도, 공사현장 안전점검 상시 모니터링, 안전관련 우수사례 및 기술 공유, CEO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 • 생물다양성, 수질과 대기, 소음공해 등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으며, 대체도로 제공 등 현지주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민협의, 공청회, 정례적인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공사 준공	• 승인 또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사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및 명확성에 대한 확인절차,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기관이 결과를 고시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뇌물 및 편의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사시행	12				
2	공사준공	2				
합 계		14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공사 시행	• 비상모의훈련 상황으로 환경피해발생 상황 지속 시행

5) 용지분양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용지분양 및 계약	•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 입주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고 입주자의 위험 감소 및 투기 예방 조치 시행 • 청년,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주거복지 기여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용지분양 및 계약	7				
합 계		7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6) 사후관리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사후관리	• 장기 미분양지 관리, 입주지원센터 운영 등 공사 이후 입주민의 보행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후관리	3				
합 계		3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2. 화성동탄2 A105BL 경기행복주택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평가 종합

1) 총평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실사 시스템	• 공사는 사업기획 ➢ 설계·발주 ➢ 주택건설 ➢ 입주자 모집기획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선정 ➢ 임대관리의 경기 행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립하고 있음 •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주거복지 사업의 확대로 예상되는 담당인력의 건강권, 안전권의 침해,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 피해 확대를 고려, 예방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뇌물과 부패에 공사 연루 사전 예방 • 설계 발주 단계에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수요자의 사업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 분양(임대) 알리미를 통해 사업지구 및 공급용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분양 및 임대 소식을 SMS로 전송하는 등 실시간 사업정보 제공 • 주택건설 단계에서는 사업 참여자의 인권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 감독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입주자 모집기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내역 등 사업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선정 절차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 • 임대관리 단계의 입주관리 및 입주 재계약 과정에서는 전세임대공급 및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임대료 조정 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입주자 보호 조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이 가능케 하는 등의 입주자의 주거 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체크리스트 종합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점수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업기획	8					100
2	설계 · 발주	6					100
3	주택건설	14					100
4	입주자 모집공고	4	1				92
5	입주자 선정	6					100
6	임대관리	5	1				93.3
합 계(평균)		43	2				97.6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 · 보완필요 3점 · 정보없음 1점 · 아니요 0점)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Σ(해당항목 지표점수) / (5×해당항목 지표수)*100
※ 해당 없음에 대한 분야 및 항목은 제외함

나. 분야별 평가

1) 사업기획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참여	• 사업참여는 지자체 및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혜 및 사익 추구를 예방하고 비준수 사항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사업계획 승인	• 승인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명확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결과를 승인권자 명의로 고시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 없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참여	5				
2	사업계획 승인	3				
합 계		8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2) 설계 · 발주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업체 선정	• 설계업체 및 시공사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에게 공사 인권정책 준수를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설계	• 공사시 해당용지 주변 환경피해를 저감방안을 설계에 반영조치하고 있으며, 공사 후 입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설계에 반영조치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업체 선정	4				
2	설계	2				
합 계		6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3) 주택건설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공사 시행	• 시공사 및 하도급 참여자의 인권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마일리지 제도, 공사현장 안전점검 상시 모니터링, 안전관련 우수사례 및 기술 공유, CEO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 • 생물다양성, 수질과 대기, 소음공해 등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으며, 대체도로 제공 등 현지주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민협의, 공청회, 정례적인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공사 준공	• 승인 또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사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및 명확성에 대한 확인절차,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기관이 결과를 고시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뇌물 및 편의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사시행	12				
2	공사준공	2				
합 계		14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4) 입주자 모집 공고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사전 협의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임대계획을 수립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모집 공고	•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 분양(임대)알리미를 통해 관심 사업지구 임대 소식을 SMS 전송, 그 외 분양 진행 및 계획, 캘린더, 분양(임대)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전협의	2	1			
2	모집공고	2				
합 계		4	1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사전 협의	• 임대주택 사업 확대가 인력, 조직 부족으로 인해 담당 인력의 건강권, 안전권 등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괴롭힘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검토 필요

5) 입주자 선정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입주자 선정	• 공사 임대규정에 입주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공정한 선정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신청 및 입주자격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 및 소득관련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
계약체결	• 계약체결 필요 외 서류는 제출받고 있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
예비입주자명부	• 공정한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주자 명부작성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작성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입주자 선정	2				
2	계약체결	2				
3	예비입주자 명부 작성	2				
합 계		6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	

6) 임대관리

가)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입주관리	•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관리계획 사전 수립, 입주센터 개소, 입주지원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음 •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담당직원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음
입주계약 갱신	• 재계약시 입주 당시 자격조건에 변화가 발생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퇴거 사유 발생 시 제한적으로 재계약 기회 제공하며, 재계약 시점에서 변경된 입주조건과 재계약 관련 정보를 입주자에게 미리 충분한 기일을 두고 제공하는 등 입주자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입주관리	3	1			
2	입주계약 갱신	2				
합 계		5	1			

다)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입주 관리	•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담당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Ⅲ 2022-2024 중점 개선 과제

구 분	목적	과제	시급도
인권 경영 체제 구축	정책 실효성 확보	•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인 정책 검토	◐
	인권영향 평가 역량제고	• 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특화된 교육훈련의 제공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 관리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개선 및 발전 조치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정례화 및 UNGC COP 등록	◐
	구제절차 실효성 확보	• 고충처리절차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임직원 대상 설문 시행 •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참고)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협력사 및 하도급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차별 이슈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행사 및 축제 대행 협력사 및 하도급 사업장 아동노동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협력 파트너 대상 인권존중 이행서약 징구 • 시공사 및 협력회사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의 구제 참여 정도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권 보장	건강권, 생명권 보장	• 비상모의훈련 상황으로 환경피해발생 상황 지속 시행	●

*시급도 ●(2022년), ◐(2023년), ○(2024년)